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2
----------	-----

2022. 3. 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2일

나.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3월 16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유경제 활성화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도민, 기업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 기업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충청북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4조)
-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최근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만이 소비가 아니라 공유하거나 렌트 하는 것도 소비라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공유경제 모델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의식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고 있음
- 공유경제는 숙박, 차량, 금융 등의 유형 자원을 활용한 공유서비스에서 경험, 시간 등의 무형 자원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된 재화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공유경제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선도적 사례가 창출되고 있으나, 충북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상황임

☑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는 2008년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보임¹⁰⁾. 해당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용과 가격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경제방식의 틀을 넘어 재화의 소유권이 보다 약해지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경제형태로 봄

과거에도 자산을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자산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예컨대 자동차 렌트, 숙박업)가 존재해 왔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은 ① 공급자가 전업사업자나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임시로 유희상태가 됐을 때 이를 활용**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②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래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2018년 공유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도 2020년 7월 태영호 의원 등이 공유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육성 및 지원(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12.12.3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4.03.1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17.12.2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7.12.2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13.11.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15.02.1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7.01
경기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08.07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09.20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7.05.19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8.12.31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19.05.02

10) Lawrence Lessig, Remix : Making Art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2008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레이첼 보츠만의 정의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자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소비한다는 의미에서의 협력적 소비”로 해석하고 있음¹¹⁾
 - 안 제2조제1호는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유경제 기본법안의 정의와 같음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례를 각각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도 하여금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한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출자·출연기관 포함)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5년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원 조달,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11) 함창모, ‘충청북도 공유경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충북연구원, 2020.12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인식 및 문화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등 타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사항 외에 충청북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군 지자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유단체 등에 대해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등이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 시 공유단체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공유단체 등에 대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민관 거버넌스로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담당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업무 소관 국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기본계획, 공유단체 등의 지정 및 취소,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심의 등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임
- **안 제15조는 공유경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공유경제 연구·조사 및 평가,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공유단체 등의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등임

다. 종합 검토의견

-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에 그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
- 공유경제로 인하여 기존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 역차별 논란, 개인 간 거래에 따른 안전성 미확보 등 부정적 시각도 있으나
- 공유경제가 새로운 혁신동력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후생을 제고 하는 대안적 경제모델로 부상하여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쟁적으로 공유경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 12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지자체에서 공유경제 조례 제정 완료(2021년 12월)
- 따라서,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정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시·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상담,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기본(실행)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공유경제 연구·조사 및 평가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3. 관련조문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 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안 제8조, 제9조)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6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 지원 사례는 없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 자체사업으로 추진함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 지정 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은 연간 10개소 내외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고, 센터운영 인건비(3명), 공유경제 컨설팅(연간 100명), 도민교육(연간 200명), 공유경제 홍보 사업(신문방송 광고, 사업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함

나. 추계 결과 : 1,760백만원(5년간)

-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50백만원(1회)
- 공유경제지원센터 운영비* : 연간 177백만원(인건비 3명, 운영비)

* 중소기업진흥원 內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기준

- 인건비 : 팀장급(재단 5급, 4,900천원×12×1명), 직원(재단 6급, 3,700천원×12×2명)
- 운영비 : 30백만원(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 공유경제 컨설팅(연간 100명) : 25백만원(5백만원 × 5회, 회당 20명)
- 공유경제 교육(연간 200명) : 20백만원(5백만원 × 5회, 회당 40명)
- 공유경제 홍보사업(신문·방송 광고, 사업홍보물 제작) : 연간 20백만원
 - 광고 10백만원(4회 × 2.5백만원), 홍보물·책자 제작(2회 × 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 조례 내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기본계획 수립	50	50	-	-	-	-
공유단체·기업 지원	500	100	100	100	100	100
공유경제지원센터 운 영	885	177	177	177	177	177
교육(컨설팅) 및 홍 보	325	65	65	65	65	65